

인천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2570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2. 13 선고 2023나1246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257008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유병일,전수려

피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3. 3. 30.

판결선고 2023. 5. 11.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06,722,531원 및 그 중 302,554,647원에 대하여 2022. 8.

4.부터 2022. 9. 15.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22. 2.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2. 28. 접수 제631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8. 9. 13. 피고 A과 대출금 중 297,5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8. 9. 13.부터 2019. 9.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9. 13.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D)를 C은행에 발행하였고, 그 후 보증기한을 매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22. 9. 8.까지로 변경하였다.
-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을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2018. 9. 17. 기업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의 연체로 2022. 3. 2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C은행은 원고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22. 8. 4. C은행에 피고 A이 연체한

대출원리금 중 302,556,647원(보증원금 297,500,000원 + 이자 5,054,647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상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이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8%이며, 원고는 피고 A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4,447,429원을 대지급금으로 지출하였다가 보증료환급금 등으로 279,545원을 충당하여 대지급금잔액은 4,167,884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06,722,531원(대위변제금 302,554,647원 + 대지급잔액 4,167,88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2,554,64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9. 15.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의 근저당권 설정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5. 6.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21년 제136호로 피고 A이 2020. 10. 30. 피고 B로부터 1,561,611,226원을 이자는 없고 지연손해금은 연 15.5.%의 비율로 정하여 차용하되 이를 2021. 5.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 A이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 B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피고 A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1, 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일괄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21. 9.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2,658,0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1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채권, 2021. 12. 10.자 G의 169,849,560원의 가압류채권이,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H은행의 총 692,542,023원의 대출금 채권이,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8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자 I의 5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신고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이 2022. 3. 3.로 정해졌으나 피고 B는 2022. 2. 25. 피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2. 28.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6312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2022. 3. 3.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2) 피고 A의 재산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여 그 가액은 2,658,000,000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① 근저당권자 피고 B에 대한 피담보채무 1,528,207,266원 ② 근저당권자 H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692,144,023원, ③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④ 근저당권자 I에 대한 피담보채무 524,000,000원, ⑤ 주식회사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10,000,000원, ⑥ G주식회사의 가압류 청구금액 169,849,560원, ⑦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타중소시설자금대출(발생일자 2019. 1. 21.) 655,549,000원, 44,451,000원, 100,000, 000원,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발생일자 2018. 9. 17.) 47,445,000원, ⑧ H은행에 대한 일반시설자금대출 (발생일자 2021. 6. 29.) 600,000,000원, 일반운전자금대출 (발생일자 2021. 6. 29.) 55,000,000원, 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발생일자 2020. 3. 16.) 100,000,000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발생일자 2020. 3. 16.) 457,000원, ⑩ K에 대한 수입신차운용리스 정산금(발생일자 2020. 12. 31.) 856,000원의 합계 5,487,958,849원으로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위 강제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피고 B는 청구채권 1,634,818,850원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 H은행, I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또는 피담보채권을 제외하고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한 G의 가압류채권과 안분하여 573,874,481원 정도를 배당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금액은 대략 579,419,784원 정도(강제경매절차 진행시 예상 배당액과 5,545,302원의 차액이 발생하나 피고 B의 우선순위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1,200,000,000원으로 경매시 청구금액보다 줄어들었으나 G이 추후 이 사건 1, 2부동산에도 중복가압류를 함으로써 이 사건 3부동산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임)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갑 제 10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원고의 피보전권리의 인정

피고 A이 원고에게 306,722,531원의 구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A이 피고 B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하기 전이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불과 1개월 만에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2022. 3. 28.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2. 8. 4.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성과 피고 A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가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이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용증거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B는 피고 A 소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 1회 매각기일을 며칠 앞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② 피고 B가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 임차인,

가압류채권자인 G 이외에 다른 채권 관련 압류나 가압류 등이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한 채권자도 없으므로 피고 B로서는 아직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원고는 물론이고 다른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진행시 피고 B의 예상 배당액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 받은 것이 강제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채권최고액이 강제경매신청시 청구금액보다 적어 G의 중복가압류라는 우연한 사정이 없었다면 피고 B가 얻을 경제적 이익이 더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보다 높은 가격에 임의 매각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하려는 피고 A의 요청으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받았다는 피고 B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④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 B의 채권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오히려 적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과정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로 과정 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

